#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3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김기현・박성민・백종헌

김미애 · 강대식 · 조정훈

김대식 • 유상범 • 김 건

윤한홍 · 김상욱 의원

(11인)

#### 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으로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 이행에 대한 내 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37조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을 구속하 는 국제법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더 이로운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 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다. 강제실종죄, 실종자수수·은닉죄, 강제실종 상해·치상죄, 강제실종 살해·치사죄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 거나 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함께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강제송환 등의 금지 원칙(안 제15조).
- 바.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 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가의 구제의무(안 제17조).

아. 아동의 보호(안 제18조).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 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강제실종범죄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집단에 소속된 강제실종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강제실종행위자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국가보안법」제2조제1항의 반국가단체 기관의 행위 또는 반국가단체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하는 행위도 강제실종행위자등의 행위로 본다.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

적 자유를 박탈(이하 "자유박탈"이라 한다)한 후 그 자유박탈 사실 또는 자유박탈을 당한 사람의 인적사항, 생존 여부,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 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
- 2. "강제실종범죄"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 3. "강제실종범죄피해자"란 강제실종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강제실종피해자"란 강제실종범죄피해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4조(강제실종범죄 관련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실 종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등과의 관계)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형사재 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 해당하는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0조 이외의 강제실종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 각 목의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종범죄피해자의 생존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기산한다.
- 제7조(강제실종죄)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강제실종 행위자등은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강제실종행위자등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조(실종자수수·은닉죄) 제7조제1항의 죄로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강제실종 상해·치상죄) 제7조의 죄를 범하여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 제10조(강제실종 살해·치사죄) ① 제7조의 죄를 범하여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7조의 죄를 범하여 강제실종을 당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조(미수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조(예비, 음모)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3조(상급자의 책임등) ① 단체·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상급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1.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
  - 2. 강제실종범죄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위하여 관할 당국에 사건을 통보
  - ②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의 제10조의 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 받는 하급자의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국제법에 따른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4조(형의 감경)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실종범죄피해자의 생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실종 사건의 진상규명에 기여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5조(강제송환 등의 금지) 국가는 강제실종이 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추방, 송환,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3조제1호 각 목의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 종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 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제17조(국가의 구제의무) 국가는 강제실종피해자의 재활, 명예회복, 사회복귀 등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아동의 보호) 국가는 강제실종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